

의안 검토 보고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8. 24.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 건 요 지 : 따 로 붙 임
4. 검 토 의 견 : 따 로 붙 임

위 안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7년 9월 일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예 순

대전광역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07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개정이유

지속적인 기존도심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입지난 해소를 위하여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등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 법령을 정비함(안 제5조).

나.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부칙 제2항).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2007. 8. 3일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률 명칭을 개정된 법률 명칭으로 변경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한이 2017. 12. 31까지로 10년 연장됨에 따라 본 조례의 유효기간을 관련 법률에 맞게 2017. 12. 31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